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여부와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

최병록*

I. 서론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로 제조된 다양한 상품은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고도 풍족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오고 있지만, 신기술이 접목된 제조물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소비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은 단연 가습기살균제이다. 지난 18년동안 약 800만명이 사용하였으며, PHG, PHMG-인산염, CMIT 등이 함유되어 있다. 1994년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되었으며 2003년부터 특이한 폐질환인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5월 현재 환경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는 모두 221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개별적으로 제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조물책임(PL)소송과 국가배상책임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배상 책임여부에 대하여 1심법원에서 국가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을 물을려면 책임의 근거인 결함이 있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세 가지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는 면책사유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개발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설사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는 면책되게 된다.

신제품의 개발과 첨단기술의 적용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지만, 한편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전적으로 감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에 신제품의 개발로 인한 제조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그 집점을 탐구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최병록, 서원대학교 교수, 010-5468-8605, brchoi@seowon.ac.kr

II. 제조물책임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 제조물책임

1)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 Produkthaftung)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에서는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넓게 제조·판매에 관여한 모든 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하는데 특징이 있다.¹⁾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제는 입법적으로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²⁾을 지우기까지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 없었을 때에는 어떠한 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었는가?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제하여 왔다. 결함제조물의 피해자(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책임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책임요건을 변경하였다. 즉 주관적인 「과실」의 요건이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함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조물책임원칙을 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1) 제조물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에서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모두 제조업자에 해당한다(제3조 제1항). 또한 EU지역 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된다(제3조 제2항). 제품의 제조업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조자는 알 수 있으나 수입한 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제3조 제3항). ;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94-03, 1994, 230면 참조.

2) 여기서 무과실책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무과실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나 일본에서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결함책임」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이른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EU지침 제1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라는 문구가 없고 제4조의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규정에도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EU지침 전문에서는 「특히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2) 제조물책임에서 책임요건으로서 결함

제조물책임법에서 책임요건으로 도입한 「결함」은 각국의 입법례에서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결함의 공통적인 개념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안전성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³⁾

3)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여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한 기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도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서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고 정부가 원인규명하여 인정한 부분까지도 부인하면서 원인이 다른데 있다는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엽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역학조사한 530명 중 155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도 '1등급(거의 확실)'으로, 62명을 '2등급(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했다.⁴⁾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530명 중 80% 정도는 옥시싹싹을 사용하다가 폐 손상을 입었다. 옥시싹싹은 가습기세정제 시장의 판매율 1위 제품으로 세탁세제 옥시크린, 습기제거제 물먹는 하마, 향균제 데톨 등을 제조·판매하는 RB코리아의 대표 상품이다.

RB코리아는 2001년 영국계 종합생활용품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국내 동양화학그룹(현 OCI그룹)의 계열사 옥시의 생활용품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레킷벤키저는 19세기 설립돼 지난해 21억3,000만 파운드(3

3)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4)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09/dh20150905103042137780.htm>

조7,000억 원)를 벌어들였으며 런던증권거래소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한다.

문제는 가슴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애초에 제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가슴기 살균제의 원료(PHMG)를 생산한 'SK케미칼'이 이미 2003년에 가슴기 살균제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⁵⁾

국회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SK글로벌'(오스트레일리아 법인)은 호주 정부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PHMG의 흡입 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심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SK글로벌이 SK케미칼의 PHMG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산업 화학 물질 신고·평가 기관'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대한 실험은 SK케미칼 특수 화학물 지부에서 시행됐다.

'옥시싹싹 가슴기 당번' 등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전에 가슴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알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례를 보면, "이 사건 제품의 원료 공급자인 (주)SK케미칼이 작성하여 피심인 회사(옥시레킷벤키저) 등에 제공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슴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 과학기술수준(개발위험)의 항변 또는 기술수준의 항변의 의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물의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한편,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기술수준의 항변과 같은 취지의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하여 제조업자에게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하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어떠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함판단과 개발위험의 항변, 기술수준의 항변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5) <http://cafe.daum.net/vianova/FEnW/195?q=%B0%A1%BD%C0%B1%E2%BB%EC%B1%D5%C1%A6%C0% C7%20%B0%E1%C7%D4&re=1>

2)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과학기술수준(개발위험)의 항변

결함있는 제조물에 기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또는 항변사유)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위험(개발도상의 책임)의 항변」(미국에서는 이를 「기술수준의 항변」이라고 한다.)이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위험에 대하여는 제조업자에게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문제가 면책사유로 논의되는 것이다. EU지침 제7조(e)에 있는 것처럼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개발위험의 항변문제는 EU지침이 성립될 때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기술수준(State of art)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기술수준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또는 특정업계에서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달성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⁶⁾ 이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에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6)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가습기살균제의 결함판단과 과학기술수준(개발위험)의 항변과의 상관관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인 개발위험에 대하여는 대체로 제조업자의 항변을 통하여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이해는 된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결함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가습기살균제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라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문제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가습기살균제)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검토해보면 1차적으로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과학기술의 문제(기술혁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대하여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개발위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함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차적으로는 결함여부를 판단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 결함의 발생이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최고·최신의 기술수준에서 결함발생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에게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준다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가 애초에 제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는 점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PHMG)를 생산한 'SK케미칼'이 이미 2003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SK글로벌'(오스트레일리아 법인)은 호주 정부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PHMG의 흡입 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심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SK글로벌이 SK케미칼의 PHMG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산업 화학 물질 신고·평가 기관'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대한 실험은 SK케미칼 특수 화학물 지부에서 시행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본건데, 가습기살균제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나아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인 개발위험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론

결론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물의 품질향상과 편리성의 추구, 안전성의 제고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확보가능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균형있는 시각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함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지 못하며, 결함제품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완화된 판단이 나온다면 여전히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의 저해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엄청난 소비자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규모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성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제조회사의 제품개발당시의 안전의식과 소비자지향성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아가 기업의 책임의식수준은 판매로 인한 이익창출에만 매몰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제품의 생산과 피해를 양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과학적인 규명과 증거조사를 통해서 결함판단과 결함과 개발위험의 항변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4-03, 230면.

하중선·최병록(2000),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 서울 : 한국표준협회.

김민우, “소비자의 안전권”,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발표집(2010), 26-34면

문성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2014. 4), 69면.

임흥규,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현황과 교훈”, 「소비자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2012년도 한국소비자안전학회·한국소비자안전협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11. 16., 33-45면.

小林秀之(1998), 「新 製造物責任法大系 I: 海外篇」, 東京 : 弘文堂.
------(1998), 「新 製造物責任法大系 II: 日本篇」, 東京 : 弘文堂.
平野 晋(1995), 「アメリカ製造物責任法の新展開」, 東京 : 成文堂.
赤松俊武(1981), 「米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 安田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 22-23 頁, 57 頁.
浦川道太郎(1992), “グローバル時代と製造物責任法”, 「ジュリスト」第1000號(1992. 5. 1-15).
www.kca.go.kr
http://www.kca.go.kr/brd/m_367/list.do
<http://www.nocutnews.co.kr/news/4079970>
<http://goldcode.tistory.com/47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2209454838498&outlink=1>